

| | |
|-------|--------------|
| 의안번호 | 제 293 호 |
| 의결년월일 | 1994. 8. 29. |
| 의결사항 | 원안가결 |

| | |
|-------|--------------|
| 발의자 | 유병국 의원외 3인 |
| 제출년월일 | 1994. 8. 26. |

보은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수 신 : 의 장

제 목 : 보은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위건을 지방자치법 제58조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발의합니다.

1 9 9 4 . 8 . 2 6 .

발 의 자 : 유 병 국(원)장

(찬 성 의 원 서 명 : 불 임 참 조)

보은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여비의종류) 제1항중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를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제6조 (일비지급기준)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30,000원을 50,000원으로 한다.

제7조 (여비지급기준) 제1항 제2항의 (별표1)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하고 (별표1)의 식탁료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7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 구 분 | 철로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운임 | 현지교통비 | 숙박비 (1야당) | 식 비 (1일당) |
|------------|------|------|------|-------|-------|--------------|--------------|
| 의 장 부의장 | 1등급 | 2등정액 | 정 액 | 정 액 | 6,500 | 20,700 | 11,000 |
| 의 원 | 2등급 | 2등정액 | 정 액 | 정 액 | 6,500 | 16,200 | 10,500 |

- 비 고 : 1.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및 여행(동일 특별시·직할시·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7조 제2항 관련)

(단위 : 미불화)

| 구분 | 철로운임 | 선박운임 | 항공 운임 | 자동차 운임 | 일비 (1일당) | 숙박비 (1야당) | 식비 (1일당) | 준비금 | | |
|-----------|---|--|-----------|-----------|-------------|--------------|-------------|-----------|-----------------|-----------|
| | | | | | | | | 15일 미만 | 15일 - 30일 | 30일 이상 |
| 의장 부의장 | -2등급 이상의 구별이 있는 경우에 는 최상 등급의 철도 운임 등급 구 별이 있는 경우 에는 승차 에 는 실 비액 | -2등급 이상의 구별이 있는 경우에 는 최상 등급 선 임 등급 구 별이 있는 경우 에는 승 선 에 는 실 비액 | 1 등 정액 | 실비액 | 가등급 25 | 가등급 130 | 가등급 107 | 140 | 170 | 195 |
| | | | | | 나등급 25 | 나등급 90 | 나등급 78 | | | |
| 의원 | -공무 상 유 하 행 포 대 요 구 금 을 필 요 로 하 는 경 우 에 는 실 비액 | -공무 상 유 하 대 임 대 요 구 금 을 필 요 로 하 는 경 우 에 는 실 비액 | 2 등 정액 | 실비액 | 가등급 20 | 가등급 114 | 가등급 81 | 130 | 155 | 180 |
| | | | | | 나등급 20 | 나등급 74 | 나등급 59 | | | |
| | | | | | 다등급 20 | 다등급 55 | 다등급 44 | | | |
| | | | | | 라등급 20 | 라등급 46 | 라등급 37 | | | |

비고 : 국외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 구조문 대비 표

| 현 행 조 례 | 개 정 조 례 (안) |
|---|---|
| 제5조(여비의종류) ① - - - - - - - <u>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u> - - - - - | 제5조(여비의종류) ① - - - - - - - <u>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u> - - - - - - - - - - |
| ② 생 략 | ② 현 행 과 같 음 |
| 제6조(여비지급기준) - -일비는 출석 일수 1일에 <u>30,000원</u> 으로 한다. | 제6조(여비지급기준) - - - - -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u>50,000원</u> 으로 한다. |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7조 1항 관련)

(단위 : 원)

| 구 분 | 현 행 | | 개 정 안 | |
|----------------|--------------|---------------|---------------|---------------|
| | 의장·부의장 | 의 원 | 의장·부의장 | 의 원 |
| 철도운임 | 1 등 급 | 2 등 급 | 1 등 급 | 2 등 급 |
| 선박운임 | 2등정액 | 2등정액 | 2등정액 | 2등정액 |
| 항공운임 | 정 액 | 정 액 | 정 액 | 정 액 |
| 자동차운임 | 정 액 | 정 액 | 정 액 | 정 액 |
| 현지교통비 (1일당) | <u>5,000</u> | <u>4,500</u> | <u>6,500</u> | <u>6,500</u> |
| 숙 박 비 (1야당) | 갑지 | <u>17,000</u> | <u>14,000</u> | <u>20,700</u> |
| | 을지 | <u>15,000</u> | <u>11,500</u> | |
| 식 비 (1일당) | 갑지 | <u>11,000</u> | <u>10,500</u> | <u>11,000</u> |
| | 을지 | <u>9,500</u> | <u>9,000</u> | |
| 식 탁 료 | <u>800</u> | <u>800</u> | 삭 제 | 삭 제 |
| 비 고 : 생 략 | | | | |

신 구 조 문 대 비 표

[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7조 2항 관련)

(단위 : 미불화)

| 구 분 | | 현 행 | | 개 정 안 | |
|--|-----|----------|-----|----------|-----|
| | | 의장 · 부의장 | 의 원 | 의장 · 부의장 | 의 원 |
|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1일당) | | 생략 | | 현행과 같음 | |
| 숙박비 (1야당) | 가등급 | 100 | 83 | 130 | 114 |
| | 나등급 | 79 | 66 | 90 | 74 |
| | 다등급 | 60 | 50 | 72 | 55 |
| | 라등급 | 40 | 33 | 62 | 46 |
| 식비 (1일당) | 가등급 | 53 | 48 | 107 | 81 |
| | 나등급 | 46 | 42 | 78 | 59 |
| | 다등급 | 40 | 36 | 58 | 44 |
| | 라등급 | 33 | 30 | 49 | 37 |
| 준비금 | | 생략 | | 현행과 같음 | |
| 비고 : 생략 | | | | | |